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80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11. 24.

판 결 선 고 2015.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12,993,890원의 부과처분 중 150,875,5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가. 원고는 2011년경 원고 소유의 [redacted]시 [redacted]구 B 토지가 수용되자, 2011. 3. 29. 대체취득의 일환으로 고양시 [redacted]동구 C 대 775㎡ 및 그 지상 단독주택, D 전 618㎡, E 전 324㎡(이하 위 E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581,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5. 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 29.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 및 C 토지상에 일반목구조 단독주택 191.97㎡ 1동,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차고) 35.4㎡ 1동,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창고) 11.8㎡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3. 2.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인 140,871,130원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4,451,52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3. 3. 6.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에 관하여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의 차액인 81,648,000원으로 하고 일반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796,2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30. 이 사건 건물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의 대지면적이 1,065㎡이고, 그 가액이 140,871,130원이며, 이 사건 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이 839,000,000원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0. 8.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 제3호의 고급주택에 해당됨을 이유로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예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4. 10. 24.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합계 212,993,890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0. 27.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212,993,8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됨에 따른 취득세는 2013. 2.경 이미 납부하였고, 위 토지에 대한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서의 전환으로 인한 취득세는 이미 별지 취득세 등 세액산출내역 기재 중 과세물건 ② 부분에 반영되었으므로, 과세물건 ④ 부분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는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

2) 원고는 처분청인 피고가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출력하여 준 세금고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이므로, 비록 세액 산정이 잘못되어 과소신고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점, 취득세의 부과가 신고납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부과납세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행정관행에 대한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원고에게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점, 더구나 처분청이 스스로 잘못 결정한 세액을 수정하면서 추징시기마저 자의적으로 정한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액수 또한 자의적으로 정해질 수 있는 점, 원고에게 과세권의 행사나 조세채권의 실현을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한 부분은 위법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150,875,560원[= 212,993,890원 - (과세대상 ④ 부분에 대한 본세 및 가산세 합계 9,068,980원 + 과세대상 ① 내지 ③ 부분에 대한 가산세 합계 53,049,3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중과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제13조 제5항 제3호는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한편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의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고급주택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의 부과와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함으로 인한 취득세의 부과는 그 과세대상을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서 중복된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취득세 등 세액산출내역 기재 중 과세물건 ②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취득일 당시 고급주택의 취득이 있었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인 반면, 과세물건 ④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의 가액이 증가됨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취득세인 점 등을 종합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물건 ④ 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내용이 과세물건 ② 부분에 대한 취득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 금액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취득세에서 공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가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을 산출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안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리인인 법무사 F가 2013. 2. 25. 및 같은 해 3. 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및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산출세액이 기재된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가사 원고가 피고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참조),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부과할 수 있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참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취득세 등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이고, 그 신고·납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나 원고를 대리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업무를 대행한 법무사가 피고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는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인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재판장 판사 박남천

판사 김윤희

판사 김윤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별지]

취득세 등 세액산출내역

세목	과세표준	과세물건	세율	지연일수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농특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소계
취득세	793,743,674	①	12%	603	95,249,240	19,049,840	17,230,560	7,937,430	1,435,880	3,174,970	574,350	144,652,290
	259,010,290	②	11%	603	28,491,130	5,698,220	5,154,040	2,590,100	468,540	1,036,040	187,410	43,625,480
	140,871,130	③	8%	571	11,269,690	1,126,960	1,930,490	1,126,960	193,040	0	0	15,647,140
	81,648,000	④	8%	571	6,531,840	653,180	1,118,900	653,180	111,880	0	0	9,068,980
합계	1,275,273,094				141,541,900	26,528,200	25,434,010	12,307,670	2,209,340	4,211,010	761,760	212,993,890

취득일(사유발생일) : 2013. 1. 29.

과세물건

① [redacted] 외 2필지토지, 건물매매(기한후 신고분)
② 전(기한후 신고분)
③ 외 1필지건물 239.17㎡ 신축(수정신고분)
④ 전->대지 324㎡ 지목변경(수정신고분).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2.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끝.